

서울特別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提案說明

□이 안건은

○ 실·국별 책임경영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국·본부 내의 전보권 등을 보조기관에 위임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 사무를 구청장에게, 소방시설관련사무를 소방서장에게 각각 신규위임하며, 기존 위임 사무를 전면 검토 보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5급 이하 공무원의 당해 기관내 전보, 1개월 이내 교육과견명령, 호봉승급권한을 「3급 이상이 長인 보조기관의 장」에게 신규 위임하고,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신고수리 및 관련 조치명령 등 6개 사무를 구청장에게 신규위임하며,
- 소방시설 공사업·설계업·감리업 관련 10개 사무를 소방서장에게 신규 위임하는 등 총 17개 사무를 신규위임하며,
- 법령개정으로 기존위임사무 중 사무폐지 등이 된 23개 사무를 삭제하고,
- 중앙사무가 법령개정으로 시 사무로 된 58개 사무를 사무위임규칙에서 사무위임조례로 변경 규정하며,
- 기타 법령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 등 기존 위임사무를 전면 보완·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特別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

검토의견

□개요

○ 서울특별시에서 자치구청장 등에게 조례로 위임한 사무는 1998년 12월말 현재 총 404개 사무이나 실·국별 책임경영체의 효율적 운영과 법률개정에 따른 기존위임사무의 전면검토 보완정비 등을 위하여 신규위임 17개, 삭제 23개,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는 사무 58개, 법률개정으로 인한 근거조항변경 31개, 위임내용을 명확히 하는 사무 1개, 기타 32개 등 162개 사무개정으로 위임 사무는 84개가 증가된 488개 사무임.

□주요내용

○신규위임 17개 사무는

- 본청 실·국·본부단위 조직내의 5급이하 직원전보, 1개월 이내의 교육과견명령, 호봉승급권을 3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보조기관의 장에게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신고수리, 배출시설 또는 배출의 억제·방지시설 개선 등 필요조치명령 등 6개 사무를 구청장에게
- 소방시설공사업면허 등 10개 사무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것이며

○법령개정 등으로 삭제하는 위임사무는 23개로서

- 구청장을 제외한 자치구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허가 등 11개 사무는 자치구 사무로 변경
- 행정구역명칭변경증명 등 5개 사무는 폐지
- 전기안전관리담당자선임 및 해임신고수리 업무는 중앙부처로 환수
- 자동차매매업의 등록 등 5개 사무는 자동차관리사업 위임사무에 포함
- 건설국의 자동차 전용도로의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사무는 교통운영개선기획단의 위임사무와 중복되어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법령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한 사무는

- 산단단지관리에 관한 사무 등 58개 사무로서 국가사무에서 시·도 고유사무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무위임규칙에서 사무위임조례로 변경한 것이고
- ※ 국가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시에는 규칙으로 정하고 시·도 고유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경우는 조례로 정함.

○법령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사무는

-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무 등 31개로서 기존 위임사무로서 법령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것이며
- 기타 위임내용을 명확히 하는 사무 1건과 고압가스 및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등 32개는 위임사무의 내용을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신규위임사무(17개)는 실·국별 책임경영

제의 효율적 운영, 시민권의 증진, 주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거나 행정관리국(인사행정과) 사무에 있어 3급 이상 보조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5급 이하 일반직·기능직공무원 및 지방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당해기관(4급 이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 포함) 내 전보, 1개월 이내의 교육파견명령, 호봉승급중 호봉승급은 실·국·본부별 책임경영제와는 무관하다고 생각되며

- 법령개정으로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23개 사무, 법령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는 58개 사무, 법령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 31개 사무, 위임내용을 명확히 하는 1개 사무, 기타 32개 사무 등에 대한 보완·정비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아울러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제1조와 제5조제1항의 “구청장·사업소장 및 시의회 사무처장”을 “시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의 장·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으로 하는 것은 보조기관에도 사무를 위임하고 사업소장을 행정기관의 장으로 용어정리하는 것으로 별도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서울특별시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구청장·사업소장 및 시의회 사무처장”을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의 장·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구청장·사업소장 및 시의회사무처장”을 “시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의 장·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市立技能大學閉校(職業專門學校)의 還元

反對請願 提案說明

申炯植議員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서울시립기능대학을 폐지하려는 서울시 집행부의 방침이 잘못된 사실

을 발견하고 이의 폐지를 반대하는 서울시민 4,000여명의 청원을 소개하는 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서울시는 1995년 당시 기능대학 설립계획서에서 설립목적은 장황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산업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기능과 이론적 지식을 겸비한 고급기술자에 대한 산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급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까? 기능대학법 제1조는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 또는 다기능기술자 등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치하고, 제2조에서는 다기능기술자라 함은 관련분야 2 이상의 직종에 관한 실기기술과 당해기능을 기술이론분야의 영역에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함께 갖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취지에서 개교한 대한민국 수도권 서울시가 설립한 시립기능대학이 개교한 지 1년 단 한번의 졸업생도 배출하지 못한 채 폐교한다는 방침은 너무나 졸속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폐교방침의 배경으로 예산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시립기능대학 예산은 '97년도 58억원, '98년도 68억원, '99년도 47억원 등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시설투자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약간의 인건비의 지출만으로도 학교의 운영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상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설투자가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폐교로 인한 예산절감보다 사장에 따른 예산낭비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98년도 입학생 132명 가운데 보호자월수입이 70만원 밑도는 학생이 10명, 100만원 이하가 63명, 200만원 이하가 47명으로 집계되고, 200만원 이상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학생들은 가난하면 고급기술 배울 기회도 얻지 못하고 단순기능만 배워야 한다는 논리라고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지방경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즘 지방정부가 고급산업인력을 양성해 중소기업 등에 공급해야 할 것으로 최근 들어 기능대학이 늘어가는데 추세에 유독 서울시만 기능대학을 폐교하